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5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9호, 2024.3.1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3월 20일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“주”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
		제1절 치아질환 처치	
		주 : 1.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「차-1」, 「차-1-1」, 「차-1-2」, 「차-5」, 「차-6」, 「차-9」, 「차-10」, 「차-11」, 「차-11-1」, 「차-12」, 「차-13」, 「차-15」, 「차-18」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%를 가산한다.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	
	UH500 -UH550	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	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
		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.	

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, 치주조직의 처치 등 “주”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
	UH551 -UH582	제2절 수술 후 처치, 치주조직의 처치 등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.	

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“주”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
	UH583 -UH641	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「차-41」, 「차-42」, 「차-43」, 「차-45」, 「차-46」, 「차-47」, 「차-50」, 「차-52」, 「차-53」, 「차-55」, 「차-56」, 「차-59」, 「차-61」, 「차-62」, 「차-63」, 「차-66」, 「차-67」, 「차-69」, 「차-71」, 「차-72」, 「차-73」, 「차-78-1」, 「차-78-2」, 「차-84-1」, 「차-97」, 「차-98」, 「처-44」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.	

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 수술 “주”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
	UH642 -UH663	제4절 치주질환 수술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.	

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“주”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
	UH664 -UH674	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.	

부 칙

이 고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	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	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	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
제1절 치아질환 처치	제1절 치아질환 처치
주 : 1. <생략>	주 : 1. <현행과 같음>
UH010 2.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-UH051 뇌병변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 (이하생략) 장애인,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「차-1」, 「차-1-1」, 「차-1-2」, 「차-5」, 「차-6」, 「차-7」, 「차-9」, 「차-10」, 「차-11」, 「차-11-1」, 「차-12」, 「차-13」, 「차-15」, 「차-18」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%를 별도 산정한다.	UH500 2.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-UH550 있는 뇌병변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장애인에 대 하여 <u>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</u> <u>산정한다.</u>
제2절 수술 후 처치, 치주조직의 처치 등	제2절 수술 후 처치, 치주조직의 처치 등
UH232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UH233 있는 뇌병변장애인, 지적장애인, UH390 정신장애인,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「차-23-1」, 「차-39」를 실시한 경우에는 <u>소정점수의</u> <u>100%를 별도 산정한다.</u>	UH551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-UH582 있는 뇌병변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<u>소정점수의 300%를</u> <u>별도 산정한다.</u>
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	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
UH411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-UH417 있는 뇌병변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「차-41」을 실시한 경우 에는 <u>소정점수의 100%를 별도</u> <u>산정한다.</u>	UH583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-UH641 있는 뇌병변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「차-41」, 「차-42」, 「차-43」, 「차-45」, 「차-46」, 「차-47」, 「차-50」, 「차-52」, 「차-53」, 「차-55」, 「차-56」, 「차-59」, 「차-61」, 「차-62」, 「차-63」,

현행	개정
	「차-66」, 「차-67」, 「차-69」, 「차-71」, 「차-72」, 「차-73」, 「차-78-1」, 「차-78-2」, 「차-84-1」, 「차-97」, 「차-98」, 「차-44」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.
제4절 치주질환 수술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4절 치주질환 수술 <u>UH642</u>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-<u>UH663</u> 있는 뇌병변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.
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<u>UH664</u> 주 :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-<u>UH674</u> 있는 뇌병변장애인,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.